

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468
----------	-----

2019. 3. 6.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1번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2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활성화 및 공급확대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의 완화 및 조례 시행기간을 연장하고,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함.

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역세권의 범위를 서울시 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함(안 제2조제1호).
- 축진지구 외 사업계획 취소 시 환원규정을 정비함(안 제10조제4항)
- 통합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의 자격을 조정함(안 제20조제5항)

-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(안 제23조제2항 및 제4항, 제24조)
- 이 조례의 시행기간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그 효력을 인정함(부칙)

##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역세권”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,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(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)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.

제10조제4항 본문 중 “제1항제1호”를 “제1항 각 호”로 한다.

제20조제5항 중 “주관부서의 과장이 되며,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”을 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, 서기는 담당 주무관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본문 중 “소집하고자 하는”을 “소집하려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4조의 제목 “(위원의 해촉)”을 “(위원의 위촉 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을 해제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기간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그 효력을 가진다.

## 신구조문대비표(대안)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역세권”이란 <u>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지하철,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(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<u>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<u>폭이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</u>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제10조(사업계획의 취소 등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역세권”이란 <u>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,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(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)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.</u>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사업계획의 취소 등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청  
년주택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  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
률」에 따른 용도지역·용도지구  
·용도구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 
도시·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  
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 
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 
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  
도로 정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은  
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  
다.

제20조(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 
운영)

① ~ ④ (생략)

⑤ 통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 
서기 1명을 두되, 간사는 위원회  
주관부서의 과장이 되며, 서기는  
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 
된다.

⑥ (생략)

④ 제1항 각 호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20조(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 
운영)
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 
-----  
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,  
서기는 담당 주무관-----  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또는 위원장이 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·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(생략)

④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~ ⑦ (생략)

제24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9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.

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소집하려는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-----  
-----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위촉을 해제 -----  
-----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기간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에 따른 사업 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그 효력을 가진다.